

# 서울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안

##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홍국표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23명이 찬성한 「서울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최근 전세사기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,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소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공익소송은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.

□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제도 하에서는 패소 시 원고 측이 모든 소

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,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부담 때문에 정당한 공익소송의 제기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저해하고, 공익 실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.

- 이에 서울특별시가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- 구체적으로는 서울시민이 제기하는 공익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, 시민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돕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- 이번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
  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,
  -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공익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시기, 지원방안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.
  -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안 제6조에서 제12조에 걸쳐, 서울특별시 공익소송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기능과 구

성,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하였습니다.

보다 자세한 조문의 문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이상의 제안서를 바탕으로,

부디 본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